

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[별표 4]

보장성 상품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(제13조제1항제6호 관련)

1. 피보험자가 생존 시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계약을 체결·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금액
 - 나. 위험을 보장하는데 사용되는 금액
 - 다. 특별계정을 설정·운용하는데 사용되는 금액
 - 라. 중도인출수수료
 - 마. 주된 위험보장사항·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
 - 바. 계약 해지 시 공제되는 금액
2. 피보험자가 생존 시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. 이 경우, 나목은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.
 - 가. 「보험업감독규정」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에 관한 사항(예시를 포함한다). 다만, 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1-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은 제외한다.
 - 나. 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7-46조제1항마목에 따른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(예시를 포함한다)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.
 - 1)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되는 금액(이하 “계약체결비용”이라 한다)이 「보험업감독규정」 별표 14에 따른 표준해약공제액(이하 “표준해약공제액”이라 한다)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
 - 2) 위험보장 기간이 종신이고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의 1.4배(사망 외의 위험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사망 위험에 한정하여 적용한다) 이내인 경우
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
 - 가. 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1-2조 제8호에 따른 자산연계형보험: 적용이율 산출근거. 다만,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나. 보험금이 금리 등에 연동되는 상품: 직전 1년간 적용금리의 변동현황
 - 다.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: 최대 갱신 가능나이 또는 75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 갱신시점의 예상 보험료